

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내무위원회

1993. 7. 15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7월 12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7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92회 임시회

· 제1차 내무위원회 (1993. 7. 13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· 제3차 내무위원회 (1993. 7. 15) 재심의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하여 기능히 감소된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
- 통합기구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잠업검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"잠업검사소"로 하고,
- 사업소의 기능을 원잠종 생산 등 잠종시험, 생산기능과 잠종, 상묘의 검사와 잠견 검정기능을 통합규정 하는 한편,
- 소장의 직종을 "지방농업연구원"에서 업무기능에 맞게 "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원"으로 규정하고,
- 부칙에서 "잠종장조례" 및 "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"를 동시 폐지하는 것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임 홍 식)

충청북도 입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거 기존의 치산산업소를 입업시험장에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입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구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종전의 치산사업소 조례를 동시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,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로 하고 사업소의 기능에 있어 종전 입업에 관한 시험 연구 및 우량묘목 생산,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의 기능에 치산사업시행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방 사업의 설계 시공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소의 명칭이 연구소로 바뀔에 따라 조문중 관련 명칭과 조문 내용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즉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 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 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구문 대비표